

## 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**대상펀드명** : 트러스톤다이나믹코리아30연금지축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]

□ **효력발생일** : 2015년 7월 1일

□ **정정 사유** : (1) 이익분배 방법 변경(평가이익 유보 → 전액 분배)  
 (2) 제2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 
 (3) 자본시장법 및 세법 개정사항 반영

□ **정정 내용**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	서식개정에 의한 정정	<u>9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</u>
<b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
5. 운용전문인력 가. 책임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15. 5. 31 기준</u>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	투자 가능한 유동성자산 중 환매조건부 매수 추가	<u>환매조건부 매수</u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제2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<u>2015.4.25</u>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. 이익 배분	<u>1)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에서 평가이익을 차감한 나머지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. 다만,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</u>	<u>&lt;삭 제&gt;</u>

	<p>다.</p> <p>2)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수익증권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거나 현금으로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u>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(이하 "상환금 등")을 받을 수 있습니다.</u></p>	<p>1)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수익자는 판매회사와의 별도의 약정에 따라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거나 현금으로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><u>다만,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.</u></b></p>
<p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</p> <p>나. 과세</p> <p>2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</p>	<p>공제제도: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12%</p> <p>분리과세한도 : 1,200만원(공적연금 소득 제외)</p> <p><u>특별 중도해지 (연금외수령) 사유:</u> 천재지변,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·요양,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</p> <p><u>특별 중도해지 사유시 과세:</u> 기타소득 13.2% 분리과세 (지방소득세 포</p>	<p>공제제도: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</p> <p><b><u>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700만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 다만, 「소득세법」 제59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.</u></b></p> <p>분리과세한도 : 1,200만원(공적연금 소득 제외)</p> <p><b><u>단,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적용</u></b></p> <p><b><u>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:</u></b> 천재지변,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</p> <p>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·요양,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</p> <p><b><u>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:</u></b> 연금소득세 5.5~3.3%(지방소득세 포</p>

	합)	합)
<b>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b>		
1. 재무정보	제2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<u>2015.4.25</u>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제2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<u>2015.4.25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제2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	<u>2015.4.25</u>
<b>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b>		
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. 의무해지	법 개정사항 반영	<u>(5)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</u>
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. 임의해지	소규모펀드 처리방안 기재	<u>(2) 집합투자업자는(1)의 ③ 및 ④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전환,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해야 합니다.</u>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. 정기보고서 (1)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	회계감사관련 내용 기재	<u>③회계감사</u>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 말일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. 다만,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습니다. -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 원 이하인 경우 -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 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